

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2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2월 29일

3. 제안이유

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실에 불 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변경 : 15인 이내 ⇨ 11인 이내
(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4항)

나.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위촉방법 변경 (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6항)

○ 당연직 위원(5인) : 기획조정실장, 자치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복지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

○ 외부 인사 (6인) : 도지사가 위원장 및 위원 위촉

다. 위원의 임기변경 : 1년 ⇨ 3년 (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7항)

라. 회의 개의요건 변경
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(지방자치법 제140조의 3 제1항)

마. 위원장 직무대행

부위원장이 대행 ⇨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

※ 부위원장 제도 폐지 (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4 제3항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 -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11인 이내로 줄이고
 - 당연직 위원 5명은 분쟁소지가 많은 실·국장으로 임명하고
 - 위원장 및 위원 6명은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 이거나 재직한 자와
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,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 하려는 것임.
 -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하고
 - 부위원장의 제도를 폐지하여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토록 하며
 - 회의 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
-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나
 - 기존 15명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리하는 방법의 설명과
 - 결원 위원 위촉시 임기 등 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분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